

# 예 산 총 칙

202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352,382,503 | 370,571,475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103,150,178 | 333,094,505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249,232,325  | 37,476,970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| 1,249,232,325  | 37,476,970  |
|      |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         | 580,243        | 17,407      |
|      |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       | 52,602,738     | 1,578,082   |
|      |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| 11,119,997     | 333,600 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   | 626,897,676    | 18,806,930  |
|      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        | 850,000        | 25,500      |
|      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        | 3,347,206      | 100,416     |
|      | 소방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| 553,143,106    | 16,594,293  |
|      |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| 691,359        | 20,741      |

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,779,25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6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